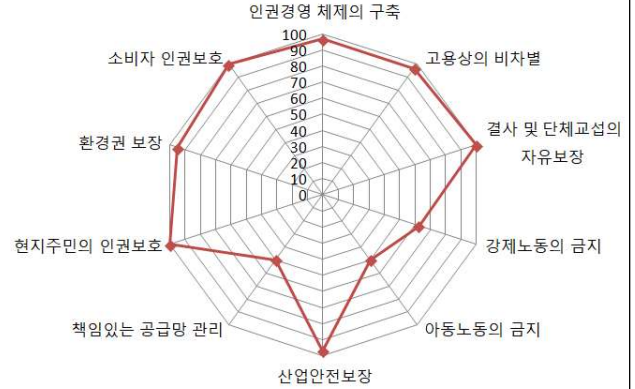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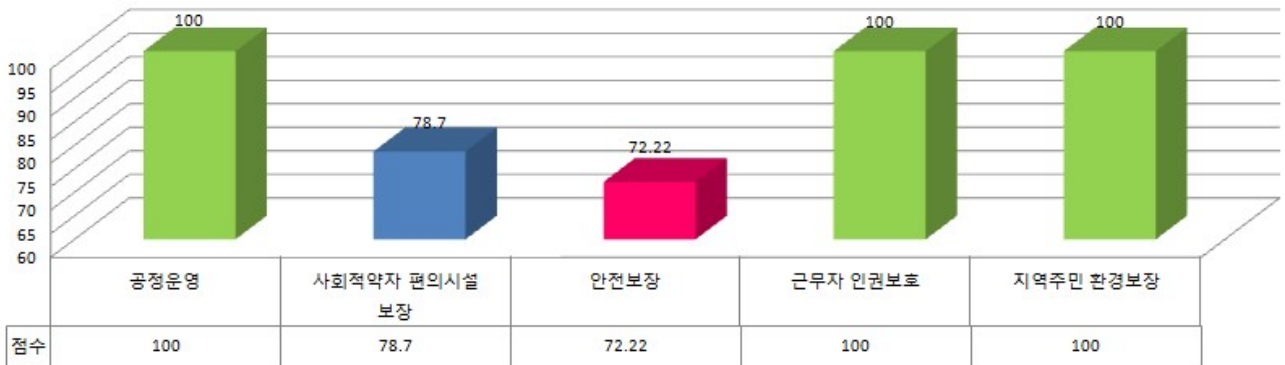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요약)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총점: 84.79점

분야	점수
평균	84.79점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6.67점
고용상의 비차별	96.88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점
강제노동의 금지	62.5점
아동노동의 금지	50점
산업안전보장	96.88점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50점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점
환경권 보장	95점
소비자 인권보호	100점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총점: 90.19점



분야	점수	주차관리	체육·청소년	시설관리
사업 소계	90.19점	80.56점	90점	100점
공정운영	100	100점	100점	100점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78.7	52.78점	83.33점	100점
안전보장	72.22	50점	66.67점	100점
근무자 인권보호	100	100점	100점	100점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점	100점	100점

□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수립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
- 계약시 협력업체 인권보호지침 권고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요청
-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해당 인권영향평가 지표 신설
- 공단 고객과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캠페인 실시

2019년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정부 정책 방향 이행 및 공단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경영 이행의 위협(Risk)을 파악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2018.08.31.)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문 송부」
- 경영전략팀-2806(2019.05.14.) “공단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기관운영, 주요사업]”
- 경영전략팀-3280(2019.06.07.) “공단 제3차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II. 인권경영 추진 체계

□ 인권경영 추진 체계도

구 분	주 요 내 용
1 단 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인권경영 선언 각 팀 및 협력사 확산
2 단 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 공단 벤치마킹·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
3 단 계 인권경영실행,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사업) 실행·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4 단 계 구제절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절차 수립· 구제절차 시행·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 인권경영 추진 실적

○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 완료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2018. 12. 21.)
(담당부서: 경영전략팀, 각 팀 담당자 지정 완료)
 - 인권경영 규정(실행 지침) 제정(2019. 2. 27.)
 - 인권경영 교육 실시

일 자(기간)	교육명	참석자
2018. 10. 2.	국민권익위원회 인권경영 설명회	인사담당, 노사담당
2018. 11. 9.	제2회 인권경영포럼	본부장(상임이사)
2019. 3. 29.	2019년 인권경영포럼	이사장, 경영전략팀장
2019. 3. 16. ~4. 23.	공단 인권교육 (인권교육센터)	이사장, 본부장, 각 팀장, 각 팀 인권경영 담당(총 18명)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2019. 4. 10.)

회 차(일자)	주요내용(안건명)
2019. 4. 10.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 본부장(상임이사), 경영전략팀장, 기획감사팀장, 근로자대표 · 외부위원: 공단 고객 1명, 공인노무사 2명
제1차 (2019. 4. 10.)	제19-01호 공단 인권경영 추진 계획 제19-02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
제2차 (2019. 5. 10.)	제19-03호 공단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기관운영, 주요사업) 제19-04호 공단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체크리스트
제3차 (2019. 6. 3.)	제19-05호 공단 인권영향평가 실시(기관운영, 주요사업)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포(2019. 4. 18. 공단 내·외부 확산 완료)

일 자(기간)	주요내용	비고
2019. 3. 19.	인권경영 선언문(헌장) 초안 논의	인권경영 담당자 회의
2019. 4. 10.	인권경영헌장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2019. 4. 18.	인권경영헌장 결재	이사장
2019. 4. 18.	공단 내·외부 인권경영 선언 및 확산	홈페이지, 협조문, 담당자, 타 기관 문서 발송

○ 2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 추진 중

-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기관운영, 주요사업) - 완료
 -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의결(2019. 5. 10.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2019. 5. 14. 이사장)
- 인권영향평가 지표 마련(기관운영, 주요사업) - 완료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체크리스트 의결(2019. 5. 10.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및 지표 교육 - 완료
 - 인권영향평가 각 팀 담당자 교육(2019. 5. 15. 인권경영 담당자 회의)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 완료
 - 평가자료 제출(2019. 5. 15 ~ 5. 24., 10일간)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완료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2019. 6. 3.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최종경영진 보고 및 공개 - 진행 중

○ 3단계 인권경영실행, 공개 - 추진 예정

○ 4단계 구체절차의 제공 - 추진 예정

III. 인권영향평가 개요

□ 인권영향평가 실시방법

- 실시일자: 2019. 6. 3.(월) 제3차 인권경영위원회
- 평가자: 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평가방법: 서면평가(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공단 추진실적 평가)

□ 인권영향평가 구분

○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평가의미: 공단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지표구성: 10개 분야, 33개 항목, 158개 지표

연번	분야	항목수/지표수	연번	분야	항목수/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30개	6	산업안전 보장	4개/17개
2	고용상의 비차별	4개/17개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개/10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개/16개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개/10개
4	강제노동의 금지	2개/11개	9	환경권 보장	4개/18개
5	아동노동의 금지	2개/14개	10	소비자인권 보호	3개/15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3개 사업, 5개 분야, 14개 지표

- 평가의미: 공단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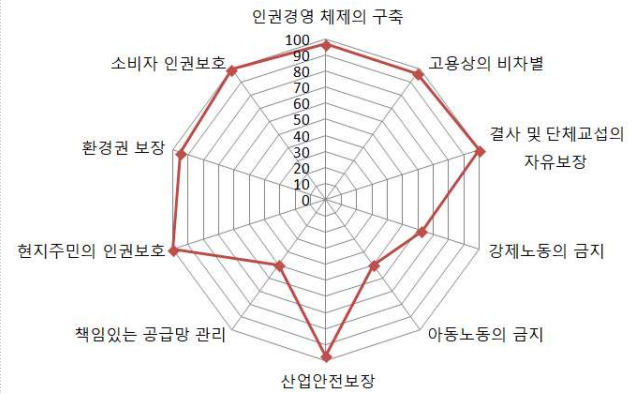
- 지표구성: 3개 사업, 5개 분야, 14개 지표(총 42개 지표)

평가대상사업	연번	평가분야
주차관리 사업 - 주차사업팀 전 사업장	1	공정운영
체육시설·청소년 사업 - 헬스장,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꿈나무종합타운	2	사회약자 이용편의시설 보장
시설관리 사업 - 행정타운, 동청사	3	안전보장
	4	근무자 인권보호
	5	지역주민 환경보장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84.7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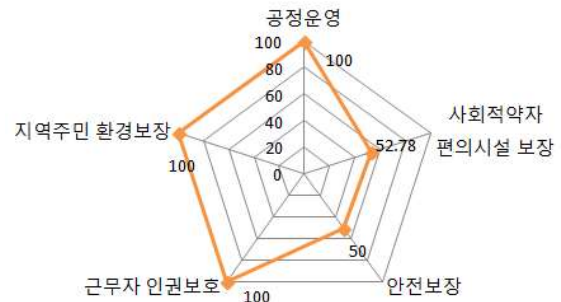
분야	점수
평점	84.79점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6.67점
고용상의 비차별	96.88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점
강제노동의 금지	62.5점
아동노동의 금지	50점
산업안전보장	96.88점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50점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점
환경권 보장	95점
소비자 인권보호	100점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90.19점**

사업	분야	점수
총계		90.19점
주차 관리	사업 소계	80.56점
	공정운영	100점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52.78점
	안전보장	50점
	근무자 인권보호	100점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점
체육 · 청소년	사업 소계	90점
	공정운영	100점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83.33점
	안전보장	66.67점
	근무자 인권보호	100점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점
시설 관리	사업 소계	100점
	공정운영	100점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100점
	안전보장	100점
	근무자 인권보호	100점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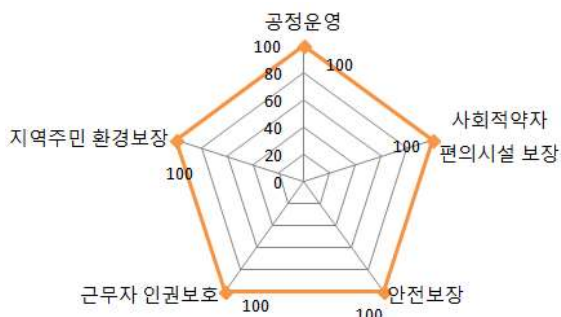
◎ 주차관리 사업



◎ 체육·청소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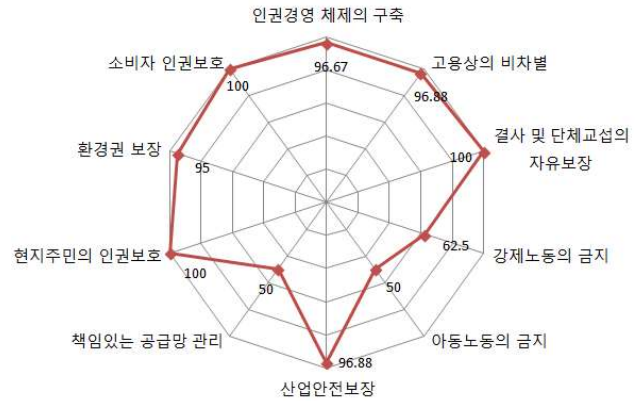
◎ 시설관리 사업



IV.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상세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총점: 84.79점

분야	점수
평점	84.79점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6.67점
고용상의 비차별	96.88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점
강제노동의 금지	62.5점
아동노동의 금지	50점
산업안전보장	96.88점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50점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점
환경권 보장	95점
소비자 인권보호	100점



- ◎ 총 10개 분야로 이루어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총점은 84.79점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및 소비자 인권보호가 가장 높은 100점을 기록하였고
아동노동의 금지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가 가장 낮은 50점을 기록하였음
-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분야의 점수가 높은 이유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해당 분야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해당사항 없음” 으로 평가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남아있는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항목의 경우 노사 협의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공단 특성이 반영되어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지역주민의 인권침해 요인이 적은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소비자 인권보호의 경우에도, 서비스 사업이 주요사업인 시설관리공단 특성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장 운영을 자치구 조례 및 공단 자체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 **아동노동의 금지**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해당 분야 구성 지표 중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지표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를 고용할 수 없는 공단 특성상 연소자 고용의 구체 조치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연소자 고용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는 **인권경영의 위협요인(Risk)으로 보기 어려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의 경우, 인권경영을 2019년 실시하는 공단으로서, 협력사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 반영된 것이며, **강제노동의 금지** 분야가 62.5점으로 점수가 낮은 이유 또한 협력사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및 방지의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으로, 향후 **공단 인권경영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파악됨

□ 항목별 평가 상세결과

○ 인권경영 체계 구축: 96.67점 (4개 항목, 30개 지표)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평점	96.67	96.67	96.67
인권존중 정책 선언	90	90	9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100	100	100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00	100	100
인권경영 성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인권경영 체계 구축 분야의 평점은 96.67점임

총 4개 항목 중 “인권존중 정책 선언” 항목이 가장 낮은 90점을 나타내었음
이는 “인권정책선언은 공단 최고의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라는 지표에서
공단 이사회 의결이 아닌 이사장 결재를 득하여 표명된 것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가
이유로 분석 됨

◎ “인권경영 성과” 항목의 경우 공단이 수립한 인권경영체계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
하는 내용으로 현 2단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이기에 전원 “해당없음” 으로
구분

○ 고용상의 비차별: 96.88점 (4개 항목, 17개 지표)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 평점	96.88	98.15	95.14
구제절차 마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용상의 비차별	100	100	100
고용상 남녀비차별	93.06	94.45	91.67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94.44	100	88.89
외국인 노동자 비차별	100	해당없음	100

◎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의 평점은 96.88점임

총 5개 항목 중 “고용상의 비차별” 과 “외국인 노동자 비차별” 이 각각 100점을
나타내었으며, “고용상 남녀비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항목이 각각 93.06점과
94.44점을 나타내었음

“고용상 남녀비차별” 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항목의 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두 항목에 동일하게 들어가있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질문에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공단 급여체제로 인한 점수 하락임

◎ “구제절차 마련” 항목의 경우 인권경영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재
2단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이기에 전원 “해당없음” 으로 구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점 (4기 항목, 16개 지표)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 평점	100	100	100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100	100	100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분야 평점은 100점임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항목이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근로자 자유논의 기회 부여 등으로 100점을 나타내었음

◎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및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항목의 경우 노동조합이 미결성으로 인하여 전원 해당없음으로 구분

○ 강제노동의 금지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 평점	62.5	66.67	58.34
강제노동 금지	100	100	100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25	33.34	16.67

◎ 강제노동의 금지 분야 평점은 62.5점임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강제노동 금지” 항목은 100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항목의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강제노동 모니터링 절차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음

◎ 향후,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보호 권고 등의 보완이 필요

○ 아동노동의 금지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 평점	50	50	50
연소자 고용금지	100	100	100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0	0	0

◎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는 50점임

공단 자체규정에 따라 연소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소가 고용이 되었을 때 보완적 조치들이 없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음

◎ “연소자 고용을 알게된 경우의 조치” 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하여 연소자의 채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의 보완 대책이 필요치 않음

◎ 공단 인권경영의 위협요인이 아님

○ 산업안전보장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 평점	96.88	95.83	96.88
작업장 안전	100	100	100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87.5	83.33	87.5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100	100	100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100	100	100

◎ 산업안전보장분야는 96.88점임

4개 항목중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분야를 제외하고 전 분야가 100점으로 평가 됨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분야 중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라는 지표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공단이 보유한 건물들의 구조적인 문제로(엘리베이터 미설치, 경사로 미설치 등) 구 건축물등을 위탁운영 및 사용하는 공단 특성상 장기과제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 평점	50	50	50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0	0	0
모니터링 실시	50	50	50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00	100	100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는 50점임

전 분야 중 공단 위협요인에서 제외된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분야임

◎ 총 3개 항목 중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은 인권경영을 실시하지 않았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 요구 및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상황 평가, 계약시 인권존중을 그대한다는 내용 포함, 인권 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 요구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0점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모니터링 실시의 경우도 협력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필요인 50점으로 평가되었음

◎ 공단 인권경영 이행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평가되며,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 취지 중 하나인 공기업에서 민간으로의 인권경영 확산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주요 개선사항으로 채택하여 **개선 필요**가 있음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 평점	100	100	100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100	100

-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분야의 평점은 100점임
 공단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항목이 100점으로 평가되었음.
- ◎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항목의 경우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구매, 재산권 강제 수단을 이용한 확보, 소유권 이전, 강제이주, 이주자 보호 등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맞지 않은 지표이기에 “해당없음”으로 구분

○ 환경권 보장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 평점	95	95	95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80	80	80
환경정보의 공개	100	100	100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100	100
비상계획 수립	100	100	100

- ◎ 환경권 보장 분야의 평점은 95점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서비스 제공분야이기에 환경 침해요인은 드물다고 평가되며, 공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정보(공기질 측정, 수질 측정, 온실가스 배출) 등은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과정 유지, 각종 비상사태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모의훈련 및 자체 재난별 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등으로 100점으로 평가 됨
- ◎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항목에서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지표에서 미실시로 인하여 항목 점수가 95점으로 평가 됨

○ 소비자 인권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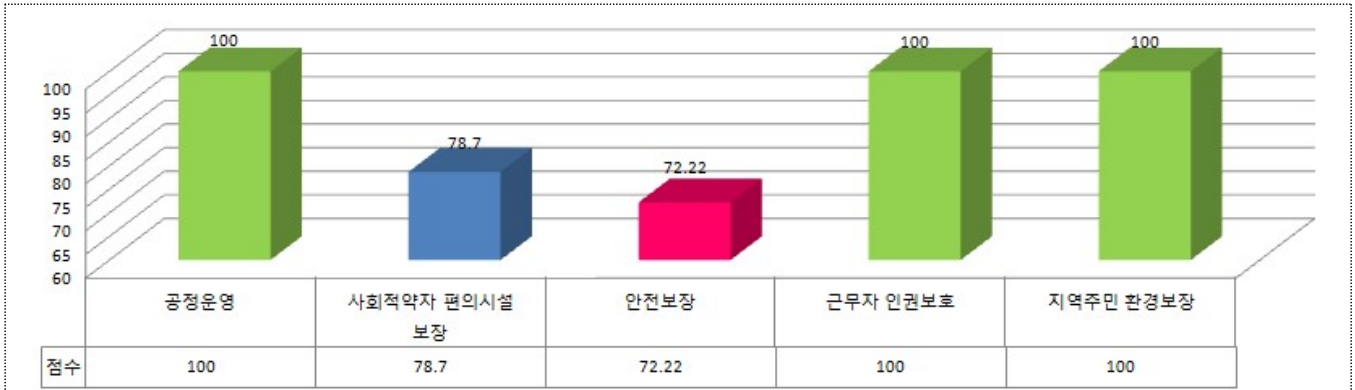
(단위: 점)

항 목	평점	내부위원 평점	외부위원 평점
분야 평점	100	100	100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100	100
제품 결함시 조치	100	100	100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	100	100

- ◎ 소비자 인권보호 분야의 평점은 100점임
 이는 자치구 공단으로써 시설 운영이 자치구 조례 또는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절차 등이 명확화 되어 있어 100점으로 평가 됨

V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상세결과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총점: 90.1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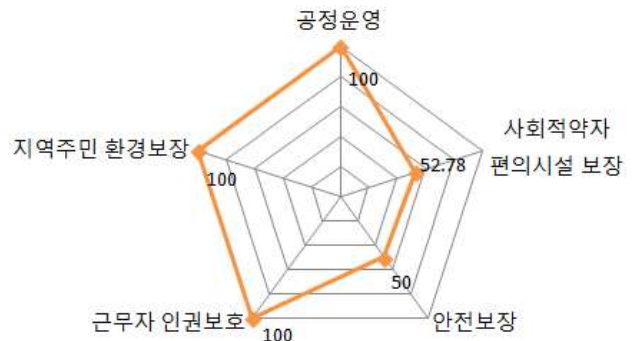
분야	점수	주차관리	체육·청소년	시설관리
사업 소개	90.19점	80.56점	90점	100점
공정운영	100	100점	100점	100점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78.7	52.78점	83.33점	100점
안전보장	72.22	50점	66.67점	100점
근무자 인권보호	100	100점	100점	100점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	100점	100점	100점

- ◎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총점은 90.19점임
시설관리 사업이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체육·청소년시설 사업이 90점, 주차관리 사업이 80.56점 순으로 평가되었음
- ◎ 사업별로는
주차관리 사업의 경우 관리사업장이 많으며, 노후된 시설 등으로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분야와 “안전보장” 분야의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음
체육·청소년 사업의 경우 화장실에 안전비상벨 미설치 등으로 “안전보장” 점수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시설관리의 경우 용산구종합행정타운(용산구청)의 시설관리를 주요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종 지표에서 100점으로 평가 됨
- ◎ 공단 인권경영의 주요 위협요인은 점수가 낮은 “안전보장” 분야와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순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분야의 경우 용산구에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단 특성상 시설개선이 어렵고, 예산 확보 등의 제약조건이 많아 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보장” 분야의 경우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주요 위협요인으로 파악됨

□ 사업별 평가 상세결과

○ 주차관리 사업

분 야	점 수
사업 소계	80.56점
공정운영	100점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52.78점
안전보장	50점
근무자 인권보호	100점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점



◎ 주차관리 사업의 점수는 80.56점임

총 5개 분야 중 “공정운영”, “근무자 인권보호” 및 “지역주민 환경보장” 분야의 점수가 100점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및 “안전보장” 분야의 점수가 각각 52.78점과 50점으로 평가되었음

“공정운영”, “근무자 인권보호” 및 “지역주민 환경보장” 등의 평가지표 구성상 용산구 조례 및 공단 규정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정부 정책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평가 받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단 자체 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위탁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위탁 시설물의 노후화 및 구형 건축물 등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음

“안전보장” 는 안전요원 미배치 및 화장실 안전 비상벨 등으로 인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냄

익년 인권영향평가지 안전요원이 불필요한 주차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경영의 주요 위협요인으로써 “안전보장” 분야의 개선이 필요함

○ 체육·청소년 사업

분 야	점 수
사업 소계	90점
공정운영	100점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83.33점
안전보장	66.67점
근무자 인권보호	100점
지역주민 환경보장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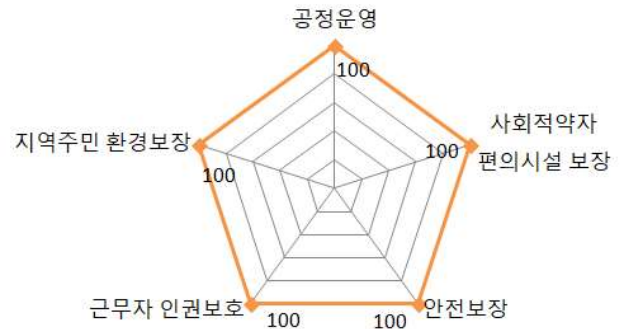
◎ 체육·청소년 사업의 점수는 90점임

총 5개 분야 중 “공정운영”, “근무자 인권보호” 및 “지역주민 환경보장” 분야의 점수가 100점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및 “안전보장” 분야의 점수가 각각 83.33점과 66.67점으로 평가되었음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분야의 경우 복합문화센터 형식의 시설물이 주요사업으로 주차관리 사업과 비교시 월체어, 장애물이 없는 화장실 및 출입구, 외국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등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안전보장” 분야 또한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주차사업과 비교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시설관리 사업

분 야	점 수
사업 소개	100점
공정운영	100점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보장	100점
안전보장	100점
근무자 인권보호	100점
지역주민 환정보장	100점



◎ 시설관리 사업의 점수는 100점임

총 5개 분야 모두 100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용산구청) 시설관리 및 각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가 주요사업 이기에 각종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이 잘 되어 있음

평가 결과를 비추어봤을 때 공단 인권경영의 위협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시설관리 사업의 평가요소들이 공단을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및 각 동 주민센터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차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시 시설관리 사업의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VI. 인권영향평가 점수 산출

□ 점수 산출 방법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평가 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

※ 분야별 점수: 항목별 해당하는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100점 단위 환산방법 = $\sum(\text{해당항목 지표점수}) / (2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수})$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평가점수: 분야별 점수의 평균값

※ 분야별 점수: 분야별 지표의 득점의 합을 100점 단위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

○ 평가등급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 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 제외

Ⅶ.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수립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
- 계약시 협력업체 인권보호지침 권고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요청
-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 실시 및 해당 인권영향평가 지표 신설
- 공단 고객과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캠페인 실시. 끝.